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80
----------	-----

2020. 3. 24.(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수완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3월 20일

-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수완 의원)

가. 제안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심의를 통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는 위원의 해임과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 운영과 간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2. 27.~'20. 3. 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의 심의를 통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 안전관리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